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93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엄태영 · 유상범 · 박덕흠
강명구 · 권영진 · 김재섭
안철수 · 복기왕 · 최형두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전제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및 기업의 실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관할 시·도 내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하여는 지정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지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관보”를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관할”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내의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제16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u>자율주행자동차</u>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 ----- ----- ----- 제16조에 따른 <u>자율주행자동차</u> ----- ----- ---. ----- ----- --.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자율주행자동차</u>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 내의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제16조의2에 따른 <u>자율주행자동차</u>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
-----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

-----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
-.

⑦ ----- 제6항-----

-----.

제16조의2(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
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
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